



청주대학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·세종지부와 청주대학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증진과 상호간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 적)

본 협약은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·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과 공통된 관심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·협력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범 위)

상호협력 협약에 따라 건강검진 혜택 및 의료 편의 제공의 범위는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, 교직원 및 직계가족으로 정한다.

제3조 (협력사항)

상기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공동사업의 발굴, 제안, 추진에 있어 인적·물적 자원 및 정보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해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

- 가. 협약 당사자의 보건의료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조
- 나. 산업 현장의 직무 분석 및 새로운 직무개발의 상호 노력
- 다.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협조와 채용 정보의 공유
- 라.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
- 마. 양 기관 간에 협약된 제반규정에 의거 건강 검진 및 의료 편의의 제공
- 바. 교수 현장 연수 및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협조
- 사. 기타 상호간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추진

제4조 (발효 및 유효기간)

- 가.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
- 나. 본 협약서의 내용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 (기타 사항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.

제6조 (시행일)

본 협약의 시행일은 청주대학교와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·세종지부가 서명·날인한 날짜를 시행일로 한다.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사회적 관례에 준하고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,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4월 3일

청주대학교

총장 정성봉

정성봉

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·세종지부

본부장 나은숙

나은숙